



## 보도자료

- ▶ 2007.6.4 배포(6.4 석간보도)
- ▶ 총 2 쪽

- ▶ 외국인력고용팀 이태희 팀장
  - ▶ 외국인력고용팀 황효정 사무관
- TEL : 2110-7080  
E-MAIL : divah@naver.com  
FAX : 504-672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한-방글라데시 고용허가제 MOU 체결

-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합법적 한국 취업길 열려 -

-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방글라데시 이프텍하르 아매드 조두리 (Iftekhar Ahmed Chowdhury) 해외근로자복지및해외취업부장관은 4일 노동부에서 방글라데시 인력의 송출·도입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-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기존 송출국가 10개국(필리핀, 몽골, 스리랑카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우즈베크, 파키스탄, 중국, 캄보디아)외에 5개국(방글라데시, 네팔, 미얀마, 키르기즈, 동티모르)을 송출국가로 신규로 추가 선정하였으며,
  - 이번에 한-방글라데시 양국 노동장관이 MOU에 서명을 함으로써 방글라데시는 신규 5개국 중 첫 번째로 MOU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.
-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“이번 MOU 체결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, 한-방글라데시 양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말했다.

□ 체결된 MOU에는

-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복지및해외취업부 산하 국영기업인 BOESL(Bangladesh Overseas Employment and Services Limited)이 송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,
-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(18~40세), 한국어능력시험 합격,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,
-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, 불법체류자 감소,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송출국가로서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.

□ 이번에 체결된 MOU 이후 한국어 시험후속합의서 체결, 송출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치,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,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

-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고용허가제를 통해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(1588-1919)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.